

2024년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1. 15.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건(안건번호 제2024-229호~25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229호~242호(순번 1번~14번)는 웹하드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43호~256호(순번 15번~28번)는 블로그와 카페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257호(순번 29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 가능성이 있으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67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4-206호~47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267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o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회의록 확인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전차회의록은 사전에 의견 요청 및 서면 의결하였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지 않겠음.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제2024-3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6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9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검토보고서 상의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4번은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웹소설 등 출판 불법복제물 총 21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순번 1번~14번,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에 대

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14번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28번은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와 카페에서 'ㄱㄱㄱ ㄱㄱ' 등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 총 38건임.

순번 15번~28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순번 15번~28번, 블로그와 카페에서 전송 중인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5번~2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1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 ☆☆☆☆☆☆☆ ☆☆☆☆☆'의 자막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원저작물은 일본에서 2023. 10. 4.부터 12. 27.까지 방영되었고, 현재 국내 유료 OTT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중임.

순번 29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점, 비록 자막파일은 번역물로서 2차적 저작물의 가능성이 있으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순번 29번 최신 영상물의 자막 파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자막만 게시한 것인지?

- 이숙형 부장: 그러함.

- A 위원: 2차적저작물 작성도 권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B 위원: 본인이 직접 번역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데, 가결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부결 사유중에 취미 목적으로, 제한된 인원 간에 직접 번역한 것을 공유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 여부 때문에 살펴보는 것인데, 해당 건의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블로그에 다량의 애니메이션 자막파일을 공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결할 여지가 없어 보임.
- A 위원: 같은 생각임. 검토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290건 이상의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중임.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 왔는지?
- 이숙형 부장: 자막 안전도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데, 해당 안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가결해 왔음.
- B 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하는데 다만, 본인이 작성한 번역물인지 검증이 안 되고, 2차적저작물로 우리가 자체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C 위원: 동의함. 본인이 작성했다고 게시한 사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번역물이나 공식 자막을 불법복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더 의견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9번을 원안대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29호~257호(순번 1번~29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8쪽부터 1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206호~472호(순번 1번~267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송수현 분과위원장(대행)이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1. 22.

분과위원장(대행)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홍승기

위원 최태경